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수사 중인 자의 산학점임교사 등 임용 절차 제한 >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96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수사 중인 자의 산학겸임교사 등 임용 절차 제한	2
2. 개정안 부칙	7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영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5. 9. 25.
3. 회 부 일 : 2025.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산학
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교원을 채용할 때 채용 제한 행위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이 발생하였음에도 징계처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강
사 등이 타 시도 교육기관 또는 사설 학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이 제기되면서 강사 등의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우수한 강
사 등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
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수사 중인 자의 산학겸임교사 등 임용 절차 제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의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우수한 강사 등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생략) <u><신설></u>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사 중인 자는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② (생 략)	<u>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u> <u>른 아동학대 및 제4호에 따른</u> <u>아동학대범죄</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¹⁾

산학겸임교사 등에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가 포함되며, 학교의 장(국·공립학교) 또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사립학교)가 담당과목을 전공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등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²⁾

1)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개정안은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학교에서 징계처분 없이 면직된 산학겸임교사 등이 다른 지역의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 절차에서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의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자를 제한함으로써 양질의 우수한 강사 등을 임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근거를 규정한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제1항에서 국·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하도록 규정함.

해당 준용 조항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제한,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준용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등은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임용될 수 없음.³⁾

-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여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3)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제1항의 준용 조항은 【참고자료 1】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한 임용 등 제한 조항 참조

개정안에 규정된 임용 절차 제한 관련 범죄행위는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현행법에서 준용하는 임용 제한 사유 등의 내용과 유사함.

다만 현행법은 ‘징계처분,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임용 등을 제한하는 반면, 개정안은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임용 절차를 제한하는 차이가 있음.

개정안에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된 사람의 임용 절차를 제한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⁴⁾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⁵⁾ 「형사소송법」에서도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4)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5)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6)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범죄 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징계처분, 형의 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유로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음.

또한 산학협력교사 등에 지원한 사람이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의 사건으로 수사 중인 사람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임용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임용권자가 지원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의 사건으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은, 현행법에서 임용 등을 제한하는 사유,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한 임용 절차 제한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할 때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산학겸임교사 등 임용시에도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원을 포함한 교원 임용에서도 ‘수사 중’ 단계는 제한 사유를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수사 단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경찰청에서 모든 수사정보를 통보하지 않아 임용권자가 수사 중 사실을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 절차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만 규정함.
- ☐ 그러나 개정법률이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 절차에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9

참고 1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한 임용 등 제한 조항

구분	임용 등 제한 조항 내용
산학겸임교사 등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국·공립학교 적용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2.1.26.> 2. 금품 수수(授受)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국·공·사립학교 적용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사립학교 적용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구분	임용 등 제한 조항 내용
국·공· 사립 학교 적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u>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u>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u>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u>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u>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u>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u>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u>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u>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u>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u>성폭력범죄</u>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u>스토킹범죄</u>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u>성폭력범죄</u>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u>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u>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u>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u>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u>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u>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u>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u>치료감호를 선고받고</u>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u>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u>을 받은 날 7. 징계로 <u>파면처분</u>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u>해임처분</u>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